

광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가단5269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8.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서 2018. 1.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2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027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인은 원고에게 159,395,211원 및 그중 126,462,139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0.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2. 4. 5. 사망하였다. 망 D의 상속인들은 배우자 E, 아들 F, 소외인, 피고가 있다.

다. 피고는 201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내용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협의분할은 2012. 4. 5.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2. 7. 1.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2018. 1. 23.에 이루어진 사실(위 협의서에 첨부된 망 D의 상속인들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는 2017. 12. 26.부터 2018. 1. 22.까지 발급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22. 7. 1.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2. 9. 14.에 2018. 1. 2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진 2018. 1. 23.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취소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나주시, 나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 23. 당시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2018. 1. 2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위 협의분할은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2018. 1. 2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인에게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23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성준

별지